

#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268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이해민 · 정춘생 · 복기왕  
민형배 · 손명수 · 김준형  
강경숙 · 박은정 · 김우영  
서왕진 · 정혜경 · 최민희  
김선민 · 최혁진 의원  
(14인)

##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이른바 리걸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법률정보기술산업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및 개인의 법률 이용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법률소비자의 편의 증진도 꾀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정보기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법률소비자의 편익을 증  
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  
다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률정보기  
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  
조).
- 라.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7조).
- 마.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령,  
판례 등 법률공공데이터의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8조).
- 바.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무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법률정보기술서비스 수준 제고와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  
여 법무부장관에 의한 인증 제도를 둠(안 제10조 및 제11조).
- 아. 법무부장관이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법률정보기술산

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률정보기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법률정보기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제행사 개최,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법률정보기술산업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파. 자료제출,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탁 및 공무원 의제 등과 관련한 보칙규정을 둠(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률정보기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법률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정보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법률업무자격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개인 또는 단체·기업·법인 등의 법률자문 등 법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2. “법률정보기술서비스”란 법률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법률분야의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판례 등 법률정보의 제공

나. 법률업무자격자에 관한 경력 등 정보의 제공

다. 자동화된 법률서식의 작성 또는 법률문서의 분석

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사실관계에 법령 등을 적용함으로써  
행하여지는 소송결과의 예측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3. “법률정보기술산업”이란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이란 법률정보기술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란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법률업무자격자”란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세무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법률소비자”란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로부터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8.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란 법률기술을 이용하여 법률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자동화한 서비스로 정보제공과정에서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정보기술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

하고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률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률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법률기술서비스사업자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기술적 한계를 명시하는 등으로 법률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장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법률정보기술서비스 관련 인증제도 등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과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규모
2.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인력 수요·공급 실태 등 인력 현황
3.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4.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법령·규제에 관한 개선 과제

5. 그 밖에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 단체 등과 공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 ① 법률정보기술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3.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법률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 공무원

2.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 대표 또는 임원
  3. 법률업무자격자 또는 그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4. 법률정보기술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 및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같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법률정보기술산업의 기반 조성

- 제8조(법률데이터의 개방 확대)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령, 판례 등 법률 관련 공공데이터(이하 “법률공공데이터”라 한다)의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률업무자격자 직역단체 등 법률공공데이터 보유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의 제공) ① 법률정보서비스사업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의 요건,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에 명시할 사항 및 이용자 보호 정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률정보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의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법무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된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한 이후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⑦ 법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지를 명하기 전에 필요 시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가 제3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의 행위가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받은 내용을 실제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업무자격자 등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서비스의 수준 제고와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그 서비스 제공의 질이 우수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인증 기준·인증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이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5. 그 밖에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제1항의 인증 및 제3항의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법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법률정보기술산업 연구·개발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률정보기술의 연구 및 개발
2.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연구·개발된 법률정보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조치
3. 법률정보기술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법률정보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법률

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의 우선 구매
4.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산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시책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

#### 제4장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지원

제14조(법률정보기술산업 해외진출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법률정보기술산업 창업지원) 법무부장관은 법률정보기술산업분야에 대한 창업을 장려하고 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17조(자료제출)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률업무자격자 또는 그 직역단체, 법률정보기술서비스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수료) ① 제10조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청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의 제공 중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취소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정보기술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칙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③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